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1999. 10. 1
□ 개정 : 2000. 3. 1
□ 개정 : 2011. 6. 30
□ 개정 : 2014. 1. 21
□ 개정 : 2017. 2. 28
□ 개정 : 2018. 3. 1
□ 개정 : 2019. 6. 18
□ 개정 : 2023. 6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① 각종 시설물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외부인(단체)은 학생 수업,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만 사용이 허가된다.

② 학교특수시설물(예 : 컨벤션센터 등)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 업체 또는 단체(기관)에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범위) 제2조의 사용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1. 강의실 및 세미나실
2.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
3. 체육장(운동장 및 테니스장)
4. 컨벤션센터
5. 기타 (학과 실험실습실 등)

제4조(체육관 운영) 삭제

제5조(관리) 본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**총무팀**에서는 외부인(단체) 관장하고 **자산관리팀**에서는 내부 행정부서 또는 학과를 관장한다.

제6조(신청 및 승인) ① 외부인(단체)이 본교 출입(신분증 제시 및 확인)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행사명, 행사기간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교직원·재학생·졸업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 한 후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. (단.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체판매 행위는 불허한다.)

제7조(사용준수) 본교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 승인 목적 이외 사용금지
2.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3. 질서유지
4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8조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
1.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(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체판매 행위)
2.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
3. 관리자의 적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

제9조(조기사용)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주민건강을 위하여 이른 아침(06:00~08:00) 본교 체육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한다.

제10조(사용료) ① 시설물의 사용자가 본교 학생이거나 교직원일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, 다만, 외부단체(업체)에게는 적정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료는 교비회계로 입금하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11조(손해배상 및 책임) 사용자가 고의 및 과실 등으로 시설물을 파손, 훼손, 멸실 하였을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상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이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 표 >

시 설 물 사 용 료

1. 강의실 및 세미나실

좌 석 수	평 일, 토 . 일, 공휴일 (시간당)	
	주 간	야 간
50석 미만	60,000원	80,000원
50석 ~ 100석	80,000원	100,000원
100석 ~ 200석	100,000원	120,000원
200석 초과	120,000원	140,000원

2. 체육장 (운동장 및 테니스장)

장 소	평 일, 토 . 일, 공휴일 (시간당)	
	주 간	야 간 (조명을 했을 경우)
체육장	100,000원	180,000원

3. 실내체육관

※ 실내체육관 냉.난방 사용 시 시간당 20,000원 부과

장 소	평 일, 토 . 일, 공휴일 (시간당)	
	주 간	야 간 (조명을 했을 경우)
실내체육관	120,000원	180,000원

4. 주차장 및 다목적홀

층	장 소	사용료 (시간당)	혼합사용료 (시간당)
1층	그랜드볼룸 I	150,000원	400,000원
	그랜드볼룸 II	150,000원	
	그랜드볼룸III	150,000원	
	식당(주방포함)	180,000원	
	준비실 I	14,000원	
	준비실 II	14,000원	
	준비실III	15,000원	
2층	메이플	35,000원	
	오크	60,000원	
	마로니에 I	60,000원	100,000원
	마로니에 II	60,000원	

■ 부가사용료

구 분	사 용 료	비 고
가스료	1일 100,000원	조리시설을 사용할 경우

5. 기타사항

① 야간 이라함은 일몰 시간 이후를 말한다.

② 계약시간 초과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 한다.